









「폐기물관리법」 시행규칙 일부개정 공포 주요내용

1. 주요내용

가. 폐기물 수집·운반차량 기준 신설(별표5)

구 분	입법예고(안)	개정공포	관련차량 사진
생활폐기물	<p>▶ 밀폐형 압축압착차량, 탱크로리형 밀폐차량으로 운반</p> <p>[예외규정] 컨테이너형 밀폐차량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원형 그대로 수집·운반하는 경우 	<p>▶ 압축압착차량이나 암롤차량 등의 밀폐된 차량으로 수집·운반</p> <p>[예외규정] 밀폐형 덮개 설치차량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일정한 형태를 갖춘 폐기물을 원형 그대로 수집·운반하는 경우(폐가전제품, 폐가구류 등) - 폐기물처리 신고대상 폐기물을 수집·운반하는 경우 - 흘날림 및 침출수가 발생되지 않는 폐목재류, 폐합성수지, 폐합성고무 등을 적재함에 실을 수 있는 기계식 장치가 부착된 차량으로 수집·운반하는 경우 	 <p>압축·압착차량</p>  <p>암롤차량</p>
음식물류 폐기물	<p>▶ 밀폐형 압축압착차량, 탱크로리형 밀폐차량으로 운반</p> <p>[예외규정] 컨테이너형 밀폐차량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밀폐된 전용의 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는 경우 	<p>▶ 탱크로리로 수집·운반</p> <p>[예외규정] 밀폐형 덮개 설치차량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밀폐된 전용 수거용기에 담아 수집·운반하는 경우에는 적재함에 덮개를 설치하고, 침출수나 액상의 물질이 유출 또는 누출되지 않도록 방지턱 등을 설치한 차량으로 수집·운반 	 <p>탱크로리 차량</p>

구 분	입법예고(안)		개정공포	관련차량 사진
사업장 일반폐기물	고상폐기물	<p>▶ 밀폐형 압축·압착차량, 탱크로리형 밀폐차량으로 운반</p> <p><u>[예외규정] 컨테이너형 밀폐차량</u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원형 그대로 운반하여야 하거나 밀폐된 용기에 담아 운반하는 경우 	<p>▶ 밀폐형 차량으로 수집·운반</p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"> <p><u>[예외규정] 밀폐형 덮개 설치차량</u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일정한 형태를 갖춘 폐기물을 수집·운반하는 경우(전기·전자 제품, 가구, 사무용 기자재 및 냉·난방기 등) - 폐지, 고철, 폐목재류나 폐내화물, 폐타이어, 광재류 등 침출수 발생이나 부패우려 및 흠날릴 우려가 없는 폐기물 수집·운반 - 침출수 발생 및 흠날릴 우려가 없는 폐목재류, 폐합성수지류, 폐합성고무 등을 적재함에 실을 수 있는 기계식 장치가 부착된 차량으로 수집·운반 - 밀폐용기나 합성수지 등으로 밀폐상태로 포장하여 수집·운반 </div> <p>※ 밀폐형 덮개 재질 및 방식은 2015년 연구 용역을 통해 별도 고시</p>	 <p>후면개폐 내장탑(밀폐형차량)</p>  <p>측면개폐 윈바디(밀폐형차량)</p>  <p>상부개폐 덤프(밀폐형차량)</p>  <p>상부개폐 암롤박스(밀폐형차량)</p>
	액상폐기물	<p>▶ 탱크로리로 운반</p> <p><u>[예외규정] 컨테이너형 밀폐차량</u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원형 그대로 운반하여야 하거나 밀폐된 용기에 담아 운반하는 경우 	<p>▶ 탱크로리로 운반</p> <p><u>[예외규정] 밀폐형 덮개 설치차량</u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밀폐된 전용 수거용기에 담아 수집·운반하는 경우에는 적재함에 덮개를 설치하고, 침출수나 액상의 물질이 유출 또는 누출되지 않도록 방지턱 등을 설치한 차량으로 수집·운반 	 <p>탱크로리 차량</p>

구 분	입법예고(안)		개정공포		관련차량 사진
지정폐기물	고상폐기물	<p>▶ 밀폐형 압축·압착차량, 탱크로리형 밀폐차량으로 운반</p> <p>[예외규정] 컨테이너형 밀폐차량</p> <p>- 원형 그대로 운반하여야 하거나 밀폐된 용기에 담아 운반하는 경우</p>	고상폐기물	<p>▶ 밀폐형 차량으로 수집·운반</p> <p>[예외규정] 밀폐형 덮개 설치차량</p> <p>- 밀폐된 전용 수거용기에 담아 수집·운반하는 경우에는 적재함에 덮개를 설치하고, 침출수나 액상의 물질이 유출 또는 누출되지 않도록 방지턱 등을 설치한 차량으로 수집·운반</p>	사업장 일반폐기물 고상폐기물과 동일
	액상폐기물	<p>▶ 탱크로리로 운반</p> <p>[예외규정] 컨테이너형 밀폐차량</p> <p>- 원형 그대로 운반하여야 하거나 밀폐된 용기에 담아 운반하는 경우</p>	액상폐기물	<p>▶ 탱크로리로 운반</p> <p>[예외규정] 밀폐형 덮개 설치차량</p> <p>- 밀폐된 전용 수거용기에 담아 수집·운반하는 경우에는 적재함에 덮개를 설치하고, 침출수나 액상의 물질이 유출 또는 누출되지 않도록 방지턱 등을 설치한 차량으로 수집·운반</p>	사업장 일반폐기물 액상폐기물과 동일

※ 밀폐형 적재함 개선 시행규칙 '14.12.31 개정공포 / '17.1.1부터 시행

※ 시행이후 신규·변경 차량부터 적용 대상이 되며, 기존차량은 밀폐형 덮개를 설치하여 운행

※ 밀폐형 덮개재질 및 방식은 2015년 연구용역을 통해 별도 고시

나. 폐기물 수집·운반업 장비 기준 변경(별표기)

구 분		입법예고(안)	개정공포
1) 생활폐기물 / 사업장생활계폐기물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밀폐식 압축·압착차량 1대 이상(특별시·광역시 2대 이상) ▶ 탱크로리형 밀폐차량 또는 컨테이너형 밀폐차량 1대 이상(적재능력 합계 15제곱미터 이상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밀폐형 압축·압착차량 1대 이상(특별시·광역시 2대 이상) ▶ 밀폐형 차량 또는 밀폐형 덮개 설치차량 1대 이상(적재능력합계 15m³이상)
2) 사업장배출 시설계폐기물	고상	▶ 밀폐형 압축·압착차량, 탱크로리형 밀폐차량 또는 컨테이너형 밀폐차량 2대 이상	▶ 밀폐형 차량 또는 밀폐형 덮개 설치차량 2대 이상
	액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탱크로리 1대 이상 ▶ 컨테이너형 밀폐차량 1대 이상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탱크로리 1대 이상 ▶ 밀폐형 차량 1대 이상
3) 지정폐기물	고상	▶ 밀폐형 압축·압착차량, 탱크로리형 밀폐차량 또는 컨테이너형 밀폐차량 3대 이상(적재능력 합계 13.5톤 이상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밀폐형 차량 2대 이상 ▶ 밀폐형 덮개 설치차량 1대 이상(적재능력 합계 13.5톤 이상)
	액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탱크로리 1대 이상 ▶ 컨테이너형 밀폐차량 1대 이상(적재능력 합계 9톤 이상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탱크로리 1대 이상 ▶ 밀폐형 차량 1대 이상(적재능력합계 9톤 이상)

2. 향후계획

- 밀폐형 덮개 재질 및 방식은 2015년 연구용역을 통해 고시될 예정으로 구체적인 기준은 우리 조합과 협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함(환경부 연구용역 참여 및 업계현실 반영 추진)